

7 전기사업허가

- 개요 : 전기사업(발전사업)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
- 법적근거 : 전기사업법 제7조
-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

구분	법정 사항	사전심사청구
처리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30일) 시설용량 3천 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- (60일) 시설용량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21일) 시설용량 3천 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- (45일) 시설용량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
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(2) 재무능력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 의견서 - 자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(3) 기술능력 관련 :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서류 (4) 계획에 따른 수행가능 여부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전 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자체의 발전설비와 접속 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(발전 설비용량이 1만 킬로와트 초과인 경우) - 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(발전설비용량이 1만 킬로와트 초과인 경우) - 송전관계 일람도 -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-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 -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,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실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(2) 재무능력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 의견서 - 자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(→ 자원조달계획서로 대체 가능) (3) 기술능력 관련 :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서류 (→ 시공업체 협력의양서로 대체가능) (4) 계획에 따른 수행가능 여부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전 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자체의 발전설비와 접속 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(발전 설비용량이 1만 킬로와트 초과인 경우) - 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(발전설비용량이 1만 킬로와트 초과인 경우) - 송전관계 일람도 -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(→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서로 대체 가능) -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 (→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서로 대체 가능) -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,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실적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 사업손익산출서 (5) 그 밖의 사항 -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(배전사업허가의 경우) -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(구역전기사업 허가의 경우) - 발전원가명세서(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 허가의 경우) - 하천점용허가증 사본 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 허가증 사본(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 사업손익산출서 (5) 그 밖의 사항 -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(배전사업허가의 경우) -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(구역전기사업 허가의 경우) - 발전원가명세서(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 허가의 경우) - 하천점용허가증 사본 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증 사본 (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)
--	--